

중국시장 활체동물(벌) 수출가능여부 조사

작성처 : aT 베이징 지사

□ 한국산 뒤영벌 대중국 수출가능여부

-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산 뒤영벌(활체생물)은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
 - 중국은 활체생물 수출입에 대한 의정서 체결국에서만 수출입을 허용하며, 현재 한국-중국 간에는 의정서 체결이 안 된 상황
 - 중국과 활체생물(벌) 수출입 의정서를 체결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뿐이며, 기타 국가의 벌은 현재 수출불가

□ 활체동물의 중국 수출절차

- 한-중 양국 간에 활체생물(벌)의 수출입 관련 의정서 체결
 - 쌍방 간의 검역협정(협정, 비망록, 검역의정서) 필요
 - * 벌의 경우 검역협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질병이 반드시 없어야 함

蜂病 (6种) Bee diseases

蜜蜂盾 病Acarapisosis of honey bees

美洲蜂幼虫腐臭病American foulbrood of honey bees

歐洲蜂幼虫腐臭病European foulbrood of honey bees

蜜蜂瓦 病Varroosis of honey bees

蜂房小甲虫病 (蜂窩甲虫) Small hive beetle infestation(Aethina tumida)

蜜蜂亮熱厲 病Tropilaelaps infestation of honey b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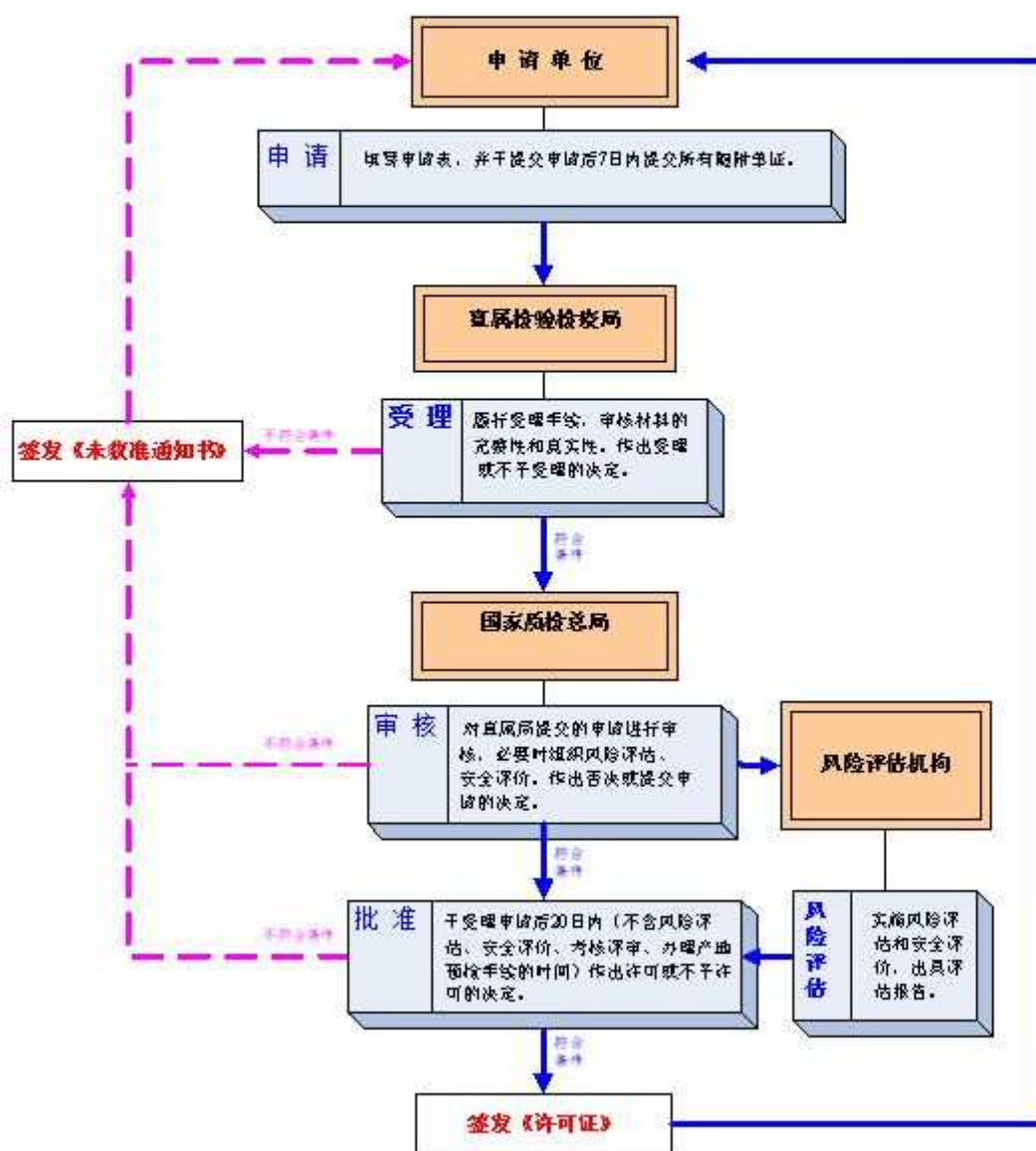
○ 의정서 체결 이후 절차

1. 국가질검총국에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進境動植物檢疫許可証) 신청
2. 현장검사(농장 검사, 동물검사, 농장 소재지 관련 전염병 유무 검사 등)
3. 격리검역(현장검역에 합격한 동물)
4. 수출진행(격리검역에 합격한 동물)
5. 중국 항구 도착하기 15~30일전에 해당 항구의 CIQ(수출입에 검역검사 신고
6. 입국현장검역
7. 격리검역, 실험실 검사
8. 위생허가증 발급
9. 통관진행

□ 관련규정

- 중국 <동식물검역법>, <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입국동물검역관리방법>, <국가입경동물격리검역관리방법> 등

进境(过境)动植物及其产品检疫审批及过境转基



因生物许可工作流程图